

#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대 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80
----------	------

발의년월일 : 2019년 9월 6일

발 의 의 원 : 김대현, 강민구, 김성태,  
김원규, 박우근, 이시복,  
임태상 의원 (7명)

## 1. 제안이유

대구국제공항은 본 조례를 비롯한 공항 활성화정책에 힘입어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하였으나, 유일한 국내 화물운송 노선인 대구-제주간 화물운송물량은 그간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고, 급기야 해당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이 사업철수를 예고함에 따라, 물류비용의 증가로 제주지역과 거래하는 지역 산업체의 수지악화와 함께 해산물 등 제주산 농수산품의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본 조례의 활성화사업 범위에 국내화물운송사업도 포함시켜, 제주와의 화물운송노선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신공항을 활용한 국제적인 물류기업의 유치 등 물류산업 육성과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공항활성화사업’의 범위에 국내화물 운송사업도 포함되도록 하여, 수익성이 미약하더라도 대구국제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국내화물노선이 유지되거나 신설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항공사업법」,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완료

조례 제 호

##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항공여객·국제화물운송”을 “항공여객·화물운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공항활성화사업”이란 대구국제공항의 <u>항공여객·국제화물운송</u>의 증대 및 공항이용 편의증진 등 공항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li> <li>3. (생 략)</li> </ol>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u>항공여객·화물운송</u>----- ----- -----.</li> <li>3. (현행과 같음)</li> </ol>

# 관계법령

## 【항공사업법】

제65조(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